

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답변

(재생열 의무설치 적용기준)

2025. 2.


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

Q1. 재생열 의무설치 기준을 준수하면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은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? 신규

※ (재생열 의무기준) 지하개발면적의 50% 이상 지열 설치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의 50% 이상 지열 · 수열 설치

- A1
- 그렇지 않습니다. 재생열 의무설치 기준과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 - 재생열 의무설치 기준 완화, 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은 준수하여야 합니다.

※ '25년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: (공공) 34%, (민간) 가 등급 15%, 나 등급 14%

Q2. 지하개발면적의 50%이상 지열설치(면적기준)의 적용기준은? 신규

A2 • 지중 열교환기 방식에 따른 공당 기준 소요면적(㎡)과 공당 기준 용량(RT)을 고려하여 최종 열펌프 기준용량을 산정하고, 산정된 최종 열펌프 기준 용량 이상 지열을 설치해야 합니다.

• (산정방법) 최종 열펌프 기준용량(RT) = 지하개발면적(㎡) x 0.5 / 공당 기준 소요면적(㎡) x 공당기준용량(RT)

☞ 지하개발면적은 건축물 지하층 중 가장 넓은 1개 층의 바닥면적을 말합니다.

• (밀폐형) 기준 소요면적은 공당 25㎡, 기준 용량은 2.5RT입니다.
(개방형) 기준 소요면적은 공당 100㎡, 기준 용량은 25RT입니다.

◆ 열 펌프 용량 산정 예시) 지하개발면적의 50%가 1,000㎡인 경우
- (밀폐형) $1,000\text{㎡} / 25\text{㎡} \times 2.5\text{RT} = 100\text{RT}$, (개방형) $1,000\text{㎡} / 100\text{㎡} \times 25\text{RT} = 250\text{RT}$

Q3. 재생열 의무설치 기준 준수여부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신규

- A3 • [의무설치 기준] 녹색건축물 설계 검토서 및 재생열 분야 근거 도서 제출(사업자, 건축주 → 녹색에너지과) ⇒ 의무기준 준수 여부 검토(녹색에너지과) ⇒ 검토 결과 통보(녹색에너지과 → 인허가 부서)
- [완화·예외 신청] 재생열 의무비율 완화·예외 신청서 제출(사업자, 건축주 → 녹색에너지과) ⇒ 서울시 재생열 자문단 개최(녹색에너지과) ⇒ 자문의견 등을 참고하여 허용 여부 통보(녹색에너지과 → 인허가 부서)
- ※ 인허가 받은 이후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녹색에너지과(☎2133-3570)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.

